

# 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(안)】

영 주 시

##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16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7.

제 출 자 : 영주시장

### 1. 폐지이유

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동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어, 규제 법정주의에 위배됨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를 폐지함.

### 3. 폐지조례(안) : 덧붙임

### 4. 참고자료 : 덧붙임

- 관련법령 (발책) 1부.

##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(안)

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련 법 령 (발췌)

### 【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】

제16조(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)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### 【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】

제35조(공중화장실의 설치·관리기준)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, 대변기 11개(남자용 3개, 여자용 8개) 이상, 소변기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. 다만,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등을 설치할 수 있다.
  2. 대변기의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이상,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(양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미터이상)일 것
  3.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. 다만, 상·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4.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,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할 것
  5.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
  6.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
-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
  2.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할 것

3. 악취의 발생과 쥐 및 파리·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·번식을 방지하도록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이상,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

### 【행정규제 기본법】

제4조(규제법정주의) ①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.

②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,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또는 조례·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이 전문적·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등으로 정할 수 있다.

③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.

### 【지방자치법】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의안검토보고서

### 1. 의안

- 의안번호 : 제166호
- 의안명 :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(안)
- 해당부서 :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

### 2. 제안이유

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, 동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어 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됨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골자

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함.

### 4. 검토의견

본 폐지조례(안)을 검토한 바,

-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규제를 통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,
-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근거법인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는 위임규정이 없어,
- 시달된 규제개혁 모델적용지침(2000. 4. 3.)에 의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됨.

2000. 12. .

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호 섭